

#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55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1. 9. .  
제 출 자: 성동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구민이 입은 피해의 범위에 ‘사고’를 포함하여 구민이 사고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(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)
- 나. 보험계약 기관에 ‘한국지방재정공제회’를 추가하여 보험계약 대상의 선택의 폭을 넓힘(안 제2조)
- 다. 보험금 지급 청구인에 ‘피해자의 법정상속인’을 추가하여,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‘법정상속인’이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- 라. 조례에 사용된 불분명한 용어를 명확히 하고, 법령에서 쓰이는 용어로 정비함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, 별첨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1. 8. 19. ~ 9. 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5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##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조 중 “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”를 “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”로, “구민”을 “서울특별시 성동구민”으로, “생활안전보험”을 “생활안전보험 운영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재난으로”를 “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”로, “구민”을 “서울특별시 성동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보험회사”를 “기관으로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”로 한다.

제5조 후단 중 “국민기초생활수급자”를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지급한다”를 “납입한다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입어 보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보험 약관”을 “입은 피보험자(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보험약관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피보험자(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)”를 “피보험자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<u>조례는 일상생활</u>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<u>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생활안전보험”이란 <u>재난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.</u></p> <p>2. “보험기관”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<u>보험회사</u>를 말한다.</p> <p>3. 4. (생략)</p> <p>제5조(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)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(이하 “구</p>	<p>제1조(목적) --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-----<u>서울특별시 성동구민</u>---- <u>생활안전보험 운영</u>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.</p> <p>1. ----- <u>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</u>----<u>서울특별시 성동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</u>----- -----.</p> <p>2. ----- <u>기관으로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</u>----.</p> <p>3.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) -- -----</p>



#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 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: 생활안전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
2. 비용추계의 전제:
  - 추계기간: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함
  - 추계방법
    - 세입: 해당없음
    - 세출: 1차년도 이후 보험료 인상을 감안하여 연 3% 증가 예상액 추계
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합계
구분	세출						
	보험료	210,000	216,300	222,789	229,473	236,357	1,114,919
□ 총 비용		210,000	216,300	222,789	229,473	236,357	1,114,919

4. 재원조달 방안 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합계
구분	구 비	210,000	216,300	222,789	229,473	236,357	1,114,919
합 계		210,000	216,300	222,789	229,473	236,357	1,114,919

5. 덧붙이는 의견: 실제비용 및 연도별 보험료 산정은 보험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변동 가능
6. 작성자: 성동구 안전관리과 행정7급 박대웅(02-2286-6496)

#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용

1. 추계방법: 1인당 보험료 x 대상 인원(명) = 총 보험료
  - 성동구 인구수: 300,000명
  - 보험 보장내역: 상해사고에 따른 상해의료비
    - 사고발생시 응급비용, 구급차, 입원비, 전문 간호비, 치료비, 수술비, X선 검사비,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 치료비, 장례비 등
  - 보장한도: 1,000,000원
  - 성동구 생활안전보험료: 구민 1인당 연간 보험료(700원) × 대상 인구수(300,000명) = 210,000,000원

## < 관 계 법 규 >

### 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### 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수급권자”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.
2. “수급자”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.